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수립

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

-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-

2020. 07

국 토 교 통 부
부산지방국토관리청

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◦ 금호강 본류구간 및 하류권역(중류, 하류)은 일부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하천개수사업, 도시화,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·수리특성 변화와 일부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인 정비·보전, 하천의 지정·관리 등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◦ 따라서,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역의 강우, 하천의 유량, 수질 및 생태,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, 이수,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,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작성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, 하천의 유지관리 등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

1.2 추진경위

◦ 2011. 02. 28: 금호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

◦ 2015. 11. 16: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착수

◦ 2015. 12. 17: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

◦ 2015. 12. 17 ~ 2016. 01. 07: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(서면심의)

◦ 2016. 04. 11 ~ 04. 25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
◦ 2019. 09. 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

◦ 2019. 09. 24 ~ 10. 31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·공고

◦ 2019. 10. 07 ~ 10. 17: 주민설명회 개최

◦ 2020. 02. :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

◦ 2020. 02. :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

◦ 2020. 07. :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 공개

1.3 계획의 내용

가. 계 획 명: 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

나. 위　　치: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경산시, 칠곡군 일원

다. 연　　장: 전체 288.18㎞ 중 196.38㎞ 하천기본계획 수립

라. 계획 수립기관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
마. 계획의 내용

◦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은 전체 26개 하천 중 14개 하천(국가하천: 금호강, 중류권역 지방하천: 숙천, 오목천, 오산천, 사림천, 남천, 송백천, 욱수천, 매호천, 하류권역 지방하천: 신천, 범어천, 팔거천, 이언천, 연호천)으로 계획하였음

<표 1-1> 하천별 기수립 현황(국가하천)

하천명	하천등급	시 점	종 점	비 고
금호강	국가	경북 영천 완산 고촌천(지방)합류점	대구 달성 다사 낙동강(국가)합류점	금호강 하천기본계획(변경) (2013, 부산지방국토관리청)

<표 1-2> 하천별 기수립 현황(중류권역 지방하천)

하천명	하천등급	시 점	종 점	비 고
부기천	지방	경북 영천 대창 사리(용덕)	경북 경산 진량 금호강(국가)합류점	부기천 하천기본계획 (2012.5, 경상북도)
숙 천	〃	대구 동 내곡 내곡동364번지선	대구 동 사복 금호강(국가)합류점	율하천·숙천 하천기본계획 (2009.7, 대구광역시)
오목천	〃	경북 경산 용성 송림	대구 동 금강 금호강(국가)합류점	오목천 하천정비기본계획 (1989.5, 경상북도)
오산천	〃	경북 경산 용성 곡란	경북 경산 용성 오목천(지방)합류점	오산·사림천(지방2급)하천정비기본계획 (2004.1, 경상북도)
사림천	〃	경북 경산 남산 사림	경북 경산 남산 오목천(지방)합류점	오산·사림천(지방2급)하천정비기본계획 (2004.1, 경상북도)
남 천	〃	경북 경산 남천 하도	대구 수성 매호 금호강(국가)합류점	남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(2009.8, 대구광역시) 남천 하천기본계획(2009.12, 경상북도) 남천 하천정비기본계획(1997.2, 경상북도)
송백천	〃	경북 경산 남천 신방	경북 경산 남천 남천(지방)합류점	송백천 하천정비기본계획 (2002.4, 경상북도)
욱수천	〃	대구 수성 욱수 욱수동58번지선	대구 수성 사월 남천(지방)합류점	매호천 외 2개하천(매호천·욱수천·금포천) 하천정비기본계획(2007.6, 대구광역시)
매호천	〃	대구 수성 삼덕 삼덕동734번지선	대구 수성 매호 남천(지방)합류점	매호천 외 2개하천(매호천·욱수천·금포천) 하천정비기본계획(2007.6, 대구광역시)

(표 계속)

하천명	하천등급	시 점	종 점	비 고
율하천	지방	대구 동 매여 매여동167 번지선	대구 동 용계 금호강(국가)합류점	율하천·숙천 하천기본계획 (2009.7, 대구광역시)
방촌천	〃	대구 동 방촌동 949번지선	대구 동 불로 금호강(국가)합류점	능성천 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(2012.7, 대구광역시)
불로천	〃	대구 동 도동 도동978-104번지선	대구 동 불로 금호강(국가)합류점	불로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(불로천, 용수천, 지묘천, 차천)(2010.7, 대구광역시)
동화천	〃	대구 동 도학동648번지선	대구 북 동변 금호강(국가)합류점	동화천 하천기본계획 (2008.5, 대구광역시)
능성천	〃	대구 동 진인동656-1번지선	대구 동 백안 동화천(지방)합류점	능성천 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(2012.7, 대구광역시)
용수천	〃	대구 동 신무 신무동512번지선	대구 동 미곡 동화천(지방)합류점	불로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(불로천, 용수천, 지묘천, 차천)(2010.7, 대구광역시)
지묘천	〃	대구 동 중대동48-6번지선	대구 동 지묘 동화천(지방)합류점	불로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(불로천, 용수천, 지묘천, 차천)(2010.7, 대구광역시)

주) 음영: 금회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하천

<표 1-3> 하천별 기수립 현황(하류권역 지방하천)

하천명	하천등급	시 점	종 점	비 고
신 천	지방	대구 달성 가창 우록리914번지선	대구 달성 가창, 수성 경계	신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(2011. 6, 대구광역시)
신 천	〃	대구 달성 가창, 수성 경계	대구 북구 침산 금호강(국가)합류점	신천 하천정비기본계획 (2001. 5, 대구광역시)
용계천	〃	대구 달성 가창 정대리산182번지선	대구 달성 가창 신천(지방.지방경계)합류점	용계천 하천기본계획 (2014.03, 대구광역시)
범어천	〃	대구 수성 지산동1484-1번지선	대구 수성 수성신천(지방)합류점	범어천 하천정비기본계획 (1993.02, 수성구)
팔거천	〃	경북 칠곡 동명 가천(상지)	대구 북구 팔달 금호강(국가)합류점	팔거천 하천정비기본계획(2005.07, 경상북도) 팔거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(2009.01, 대구광역시)
구야천	〃	경북 칠곡 동명 기성	경북 칠곡 동명 팔거천(지방)합류점	구야천 하천기본계획 (2012.5, 경상북도)
달서천	〃	대구 서 비산 3432번지선	대구 서 비산 금호강(국가)합류점	능성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(능성천,방촌천,달서천,천내천) (2012.7,대구광역시)
이언천	〃	경북 칠곡 지천 달서	경북 칠곡 동명 금호강(국가)합류점	이언·연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 (2001.11, 경상북도)
연호천	〃	경북 칠곡 지천 낙산	경북 칠곡 지천 이언천(지방)합류점	이언·연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 (2001.11, 경상북도)

주) 음영: 금회 하천기본계획 미수립 하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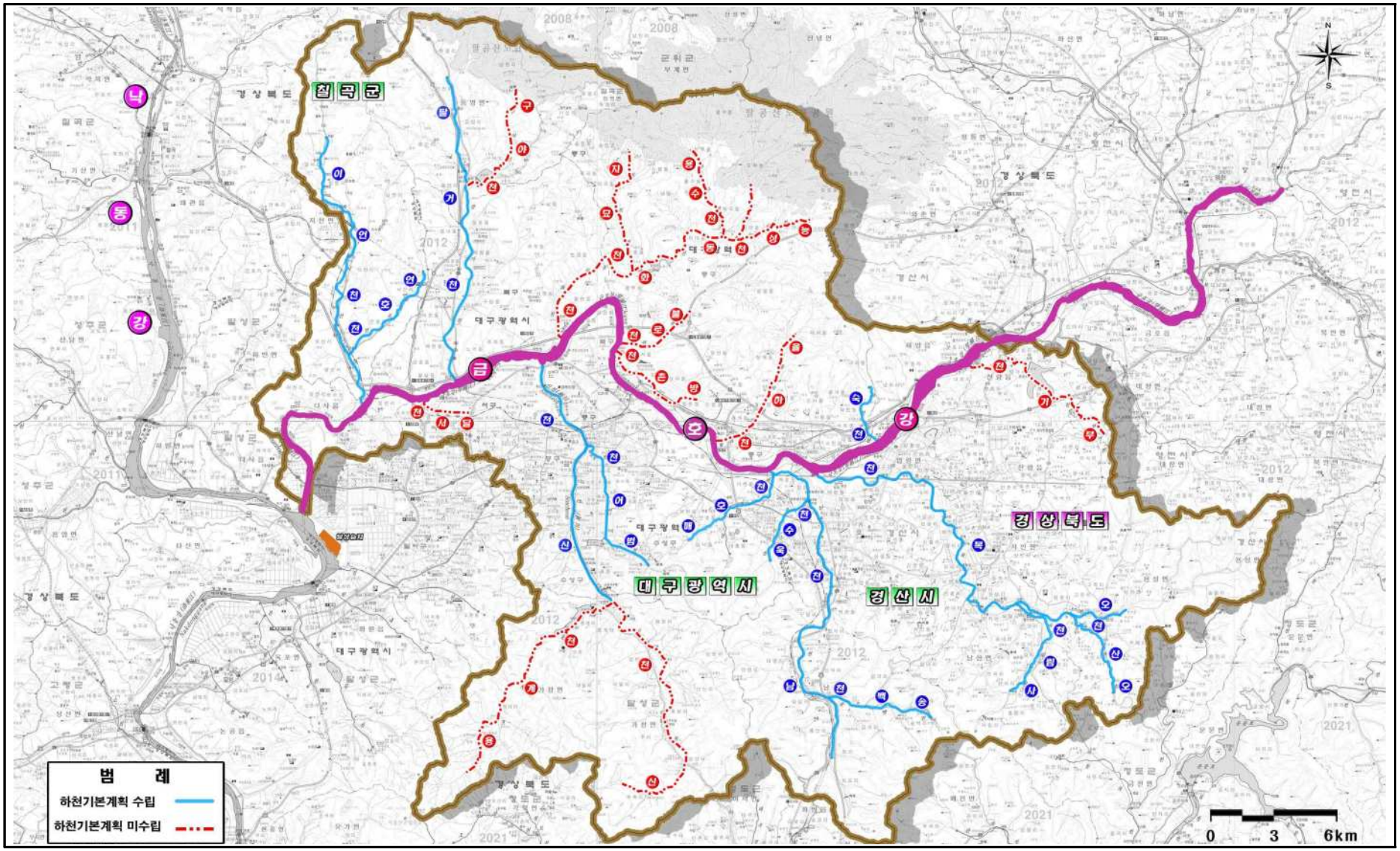

<위치도>

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

2.1 의견수렴 개요

◦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 등을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공주시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함

2.2 의견수렴 내용 및 결과

가. 공고 및 공람

구 분		내 용	비 고
주관기관		- 부산지방국토관리청	
공람	공람장소	-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- 해당 지자체 • 대구광역시 수성구, 동구, 중구, 북구, 서구, 남구, 달서구, 달성군 • 경상북도 경산시, 영천시, 칠곡군	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-173호
	공람기간	- 2019년 09월 24일～2019년 10월 31일	
정보통신망 게시		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- 아시아투데이, 대경일보	

나. 의견수렴 결과

구 분		의 견 제 출 여부	비 고
관 계 행 정 기 관 및 전 문 가	대 구 지 방 환 경 청	○	
	관 련 지 자 체	○	
	한 국 농 어 촌 공 사	○	
주 민 의 견		○	

□ 공고문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-173호

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9월 24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계획의 개요

○ 계 획 명 : 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
○ 위 치
- 국가하천 : 금호강
- 중류권역 지방하천 : 숙천, 오목천, 오산천, 사림천, 남천, 송백천, 욱수천, 매호천
- 하류권역 지방하천 : 신천, 범어천, 팔거천, 이언천, 연호천
○ 사업시행자 :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

2. 공개기간 및 장소

구 분	공람기간 및 장소
공람기간	2019.09.24~2019.10.31 (20일 이상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공람장소	-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- 해당 지자체 (대구광역시 수성구・동구・중구・북구・서구・남구・달서구・달성군, 경상북도 경산시, 영천시, 칠곡군)
정보통신망	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(http://www.molit.go.kr/irocm)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3. 주민설명회 개최

구 분	일 시	장 소	비 고
1	2019.10.07 14:00~16:00	영천시 금호읍행정복지센터	
2	2019.10.08 10:00~12:00	경산시 자인면행정복지센터	
3	2019.10.08 14:00~16:00	경산시 남천면행정복지센터	
4	2019.10.15 10:00~12:00	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	
5	2019.10.15 16:30~18:00	동구 동촌동행정복지센터	
6	2019.10.16 10:00~12:00	북구청	
7	2019.10.16 14:00~16:00	달성군 다사읍행정복지센터	
8	2019.10.17 10:00~12:00	칠곡군 지천면사무소	
9	2019.10.17 14:00~16:00	칠곡군 동명면사무소	

4. 의견제출

○ 대상 및 제출내용 :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
○ 제출처 :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/)
○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/)에 의견 등록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(☎051-660-12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

□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□ 아시아투데이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-173호

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9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계획의 개요

○ 계 획 명 : 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

○ 위 치

- 국가하천 : 금호강
- 중류권역 지방하천 : 속천, 오목천, 오산천, 사림천, 남천, 송백천, 욱수천, 매호천
- 하류권역 지방하천 : 신천, 범어천, 팔거천, 이언천, 연호천

○ 사업시행자 :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

2. 공개기간 및 장소

구 분	공람기간 및 장소
공람기간	2019.09.24~2019.10.31 (20일 이상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공람장소	-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- 해당 지자체 (대구광역시 수성구·동구·중구·북구·서구·남구·달서구·달성군, 경상북도 경산시, 영천시, 칠곡군)
정보통신망	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(http://www.molit.go.kr/irocm)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3. 주민설명회 개최

구 분	일 시	장 소	비 고
1	2019.10.07 14:00~16:00	영천시 금호읍행정복지센터	
2	2019.10.08 10:00~12:00	경산시 자인면행정복지센터	
3	2019.10.08 14:00~16:00	경산시 남천면행정복지센터	
4	2019.10.15 10:00~12:00	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	
5	2019.10.15 16:30~18:00	동구 동촌동행정복지센터	
6	2019.10.16 10:00~12:00	북구청	
7	2019.10.16 14:00~16:00	달성군 다사읍행정복지센터	
8	2019.10.17 10:00~12:00	칠곡군 지천면사무소	
9	2019.10.17 14:00~16:00	칠곡군 동명면사무소	

4. 의견제출

○ 대상 및 제출내용 :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

○ 제출처 :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/)

○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/)에 의견 등록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(☎051-660-12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대경일보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-173호

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9월 24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계획의 개요

○ 계 획 명 : 금호강 하류권역(중류, 하류)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

○ 위 치 – 국가하천 : 금호강
– 중류권역 지방하천 : 속천, 오목천, 오산천, 사림천, 남천, 송백천, 욱수천, 매호천
– 하류권역 지방하천 : 신천, 범어천, 팔거천, 이언천, 연호천

○ 사업시행자 :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

2. 공개기간 및 장소

구 분	공람기간 및 장소
공람기간	2019.09.24~2019.10.31 (20일 이상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공람장소	–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– 해당 지자체 (대구광역시 수성구 · 동구 · 중구 · 북구 · 서구 · 남구 · 달서구 · 달성군, 경상북도 경산시, 영천시, 칠곡군)
정보통신망	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(http://www.molit.go.kr/irocm)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3. 주민설명회 개최

구분	일 시	장 소	비고
1	2019.10.07 14:00~16:00	영천시 금호읍행정복지센터	
2	2019.10.08 10:00~12:00	경산시 자인면행정복지센터	
3	2019.10.08 14:00~16:00	경산시 남천면행정복지센터	
4	2019.10.15 10:00~12:00	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	
5	2019.10.15 16:30~18:00	동구 동촌동행정복지센터	
6	2019.10.16 10:00~12:00	북구청	
7	2019.10.16 14:00~16:00	달성군 다사읍행정복지센터	
8	2019.10.17 10:00~12:00	칠곡군 지천면사무소	
9	2019.10.17 14:00~16:00	칠곡군 동명면사무소	

4. 의견제출

○ 대상 및 제출내용 :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

○ 제출처 :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/)

○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://www.eiass.go.kr/)에 의견 등록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(☎051-660-12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영천시 금호읍행정복지센터

경산시 자인면행정복지센터

경산시 남천면행정복지센터

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

동구 동촌동행정복지센터

북구청

<주민설명회 개최 현황>

(그림 계속)

달성군 다사읍행정복지센터	칠곡군 지천면사무소
칠곡군 동명면사무소	

2.3 의견수렴 반영여부

가. 관계 행정기관

1) 대구지방환경청

<표 2-1>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초안의견 반영여부(대구지방환경청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□총괄 ◦본 계획은 금호강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, 경산시, 칠곡군에 위치한 금호강 중·하류권역의 숙천, 오목천, 팔거천 등 지방하천 13개소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임	-	
◦하천별 생태현황을 토대로 적절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현황조사가 미흡한 하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, 하천별 생태 및 환경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◦현지조사('18년 02월, 04월~05월, 07월, 09월, '19년 01월, 05월~07월)를 수행하여 하천변 생태 및 현황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	p.214
◦축제·보축, 호안, 보·낙차공, 교량공 등 하천정비 사업 등은 하천 생태적·수질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, 필요시 타당성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함	◦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시설물에 대한 능력 검토를 시행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	p.1231 ~1334
◦횡적시설물(보·낙차공 등)은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저해하므로 하천별 시설별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우선 철거하고 신설 및 재가설 계획은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 정비를 계획하여야 함	◦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적시설물(보·낙차공 등)의 신설은 없으며, 현재 이수목적의 활용이 없는 구조물은 최대한 철거토록 계획하였음	p.1484 ~1566
◦하천별 치수계획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과도한 개수계획을 지양하고, 하천 및 수변 환경을 고려하여 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구간에 한하여 적정규모의 정비를 계획하여야 함	◦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고 하천환경,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존 제방이 기존 제방이 홍수위 보다 낮아 개수계획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적정규모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음	p.157 ~199
◦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우리청과 협의한 모든 사항을 반영하고,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	◦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	p.119 ~131
◦본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를 작성하여야 함	◦본 계획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(대구광역시, 영천시, 경산시, 칠곡군 등)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을 작성하였음	p.132 ~136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□세부 협의내용 1. 계획의 적정성 1)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◦하천기본계획은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이므로 통합적 물관리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상위계획으로의 상세함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함	-	
◦따라서 국가 및 각 지방하천별 관리를 위한 10년 기간의 법정계획이므로 하천별 상세한 현황과 보전시책, 시설계획 및 시설물 관리대장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	◦하천별 상세한 현황과 보전시책, 시설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에 제시하였음	p.1416 ~1566
◦하천기본계획은 각 하천별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여 재작성하고,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하천에 한하여 유역개념을 적용하여 타 하천과 함께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	◦각 하천별 개수계획 등의 하천기본계획은 각 하천별로 수립하였음	p.1436 ~1568
◦기수립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금회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근 변경 수립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하여야 함	◦기수립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금회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근 변경 수립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하였음	p.157 ~199
2)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 ◦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중요한 요소인 대안분석을 통해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계획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-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안분석을 통해 세부계획(축제 및 보축, 횡적시설물 재가설, 하도정비 등)의 타당성이 적정하게 비교·평가될 수 있도록, 항목별 현황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하천특성을 반영한 개별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안별 특성(계획의 필요성 및 장·단점, 항목별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)을 비교·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	◦세부계획(축제 및 보축, 횡적시설물 재가설, 하도정비 등)의 타당성이 적정하게 비교·평가될 수 있도록, 항목별 현황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하천특성을 반영한 개별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안별 특성(계획의 필요성 및 장·단점, 항목별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)을 비교·분석하였음	p.25 ~32
•제방계획(축제 및 보축) 등의 구간별 계획대안(수립과 미수립) 및 수단방법 대안(홍수조절지, 저류시설 설치 등)의 비교·분석	◦제방계획 수립시 주변현황(제내지현황)을 검토하여 축제계획 또는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의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용하였음	p.27, p.1151 ~1230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•제방계획에 따른 구간별 호안설치 수단·방법 대안의 비교·분석	◦호안설치시 상하류에 기설치 된 호안을 조사하고, 수충부 및 비수충부 등의 하도 현황을 검토하여 설치 가능한 다양한 호안 공법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	p.28 ~31
•개별적인 횡적시설물(보 및 낙차공, 교량)에 대해 철거를 포함한 계획대안(철거, 유지, 재가설)과 생태적 기법(여울 설치 등)을 고려한 수단·방법 대안 비교·분석	◦횡적시설물은 능력검토를 시행하여 유지 및 재가설을 검토하였으며, 현재 이수기능이 없는 보 및 낙차공은 철거하도록 계획하였음. 재가설되는 보 및 낙차공들은 생태적 공법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	p.1247 ~1254, p.1315 ~1321
•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구별 계획대안(보전, 복원, 친수)의 비교·분석	◦공간관리계획 하천지구지정은 하천현황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음	p.132 ~136
◦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, 제방 및 호안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의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,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, 침수범위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(농경지, 가옥 등)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(홍수관리구역 지정, 천변저류지 등)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	◦확폭, 제방 및 호안 등의 구조물 계획은 홍수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만 적용하였으며, 하천의 상류부와 같이 범람 예상면적이 협소한 구간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적용하였음	p.1151 ~1230
2. 입지의 타당성 1) 자연환경의 보전 가.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◦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별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10년간 적용될 장기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 각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분리하여 재구성하여야 함 -동식물상: 소산식물 및 출현 동물상 목록을 하천별로 목록을 작성	◦식물상 및 동물상 출현 목록은 하천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음	분류군별 목록
-하천별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지점 명기	◦하천별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지점을 제시하였음	p.244, p.262, p.435 ~437, p.593 ~595, p.727 ~747
◦사업대상 하천구간 중 하천합류부, 습지, 생태자연도 1·2등급,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이상인 지역, 각종 보호지역(상수원 보호구역, 자연공원, 야생동식물 보호구역) 및 인접지는 육수환경 보전측면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-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은 사업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고, 수변식생 원형보존, 횡적시설물(보, 낙차공 등) 철거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저감 및 보전대책을 수립・제시하여야 함	◦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·2등급,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이상인 지역, 각종 보호지역(상수원 보호구역, 자연공원, 야생동식물 보호구역)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에 따른 서식동물의 생활사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생태계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	p.749 ~757, p.815 ~817, p.843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•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포함하는 금호강 오수보축지구(우 123 +380~128+200), 이언천(좌 4+540), 연호천(3+500)은 영향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결과를 도면과 함께 제시	◦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포함하는 금호강 오수보축지구(우 123 +380~128+200), 이언천(좌 4+540), 연호천(3+500)은 영향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결과를 도면과 함께 제시하였음	p.753 ~757
•금호강과 오목천의 습지분포 구간 중 개수계획 및 교량 재가설·철거가 계획된 습지[노원·팔현·황정·금노·단포습지, 내리교습지(평가서 642쪽, 644쪽)]에 대해서는 하천별 습지역 보존계획을 토대로 상세한 평가 결과를 도면과 함께 제시 ·습지의 면적 및 구역 경계(계절적 변동 포함) ·습지 식생구조 및 우점종, 동계 조류상 ·습지 서식 동물상 및 해당 하천구역 내 담수 생물상 등	◦금호강과 오목천의 습지분포 구간 중 개수계획 및 교량 재가설·철거가 계획된 습지(노원·팔현·황정·금노·단포습지, 내리교습지)에 대해서는 하천별 습지역 보존계획을 토대로 상세한 평가 결과를 도면과 함께 제시하였으며, 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” 별표4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방법(제23조 관련)에서는 습지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심대한 영향의 유무를 검토하고 국립습지센터의 정밀조사자료를 인용하였음 ◦습지별 면적 및 수심을 제시하고, 주요 식생 및 조류, 담수 생물, 법정보호종(문헌)을 제시하여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	p.758 ~763 p.817 ~819, p.843 ~844
◦수생태계 이동교란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주는 횡적 시설물(보·낙차공, 홍수방어벽) 계획의 적정성,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를 우선으로 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-사업대상 하천 내 보·낙차공 현황을 제시하고,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	◦사업대상 하천 내 보·낙차공 현황 및 기능 분석 결과에 따른 철거 및 존치 등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며, 하천 내 보·낙차공 계획은 수생태계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여 담수생물상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제시하였음	p.1247 ~1254, p.1315 ~1321
•계획평면도에 보·낙차공 위치를 표기하고, 현장사진을 포함한 현황 분석자료 제시	◦계획평면도에 보·낙차공 위치를 표기하고, 현장사진을 포함한 현황 분석자료 제시하였음	p.1247 ~1254, p.1513 ~1566, p.2195 ~2212
•현재 설치 된 어도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보·낙차공 현황 사진 및 시설물 대비 어도설치 비율 제시	◦현재 설치 된 어도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보·낙차공 현황 사진 및 어도설치 현황을 제시하였음	p.2195 ~2212, p.789 ~813
-존치 및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·제시를 통한 철거 및 축소 조정안(철거 비율 명시) 제시	◦구조물 능력검토(교량 및 보·낙차공 등)를 통해 시설물의 계획 타당성(존치, 철거, 재가설 등의 비율 명시)을 검토·제시하였음	p.1232 ~1293, p.1484 ~1485
-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은 소(굄)을 형성하여 인공적 구조물 보강 및 재가설을 지양하는 계획 수립·제시	◦보 및 낙차공 등은 지역주민의견 및 하천환경 등을 검토하여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재가설이 불가피한 경우 육수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어도 확보방안을 검토하였음	p.1315 ~1321, p.789 ~813, p.829 ~834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-불가피하게 보강 및 재가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단차 여울형 등 육수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적 기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(과도한 어도설치 최소화) •어도설치 시 서식 어류의 생활사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, 적용 시 완만한 유속을 보장하고 수직단차를 유발하지 않는 생태기법(여울형, 자연형 전면식 등)을 적극 반영하여 육수생물상의 분포구배 및 물질순환에 있어 불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※「생태하천복원 기술 지침서」(환경부, 2011), 「2017년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례집」(환경부, 2017) 참조	◦어도설치 시 서식 어류의 생활사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, 적용 시 완만한 유속을 보장하고 수직단차를 유발하지 않는 생태기법(여울형, 자연형 전면식 등)을 적극 반영하였음 ◦어도설치는 하천의 현황을 고려하여, 어류의 생활사 및 특성에 맞는 어도를 계획하고, 어도설치를 최소하도록 제시하였음	p.829 ~834
-계획구간에 계획된 홍수방어벽의 설치는 하천 횡단면상 수변부의 수직단차를 유발하는 공법으로 생태적 연결성과 야생동물의 접근성을 제약하므로 지양하여야 함 •홍수방어벽 설치구간의 축제 및 확폭 확장 가능여부를 검토하고,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법정보호종 및 소형동물의 탈출 및 이동을 위한 측구의 설치 등 대안 검토·제시(설치구간표 및 도면표시)	◦홍수방어벽은 홍수위보다 높아 일부 여유고가 부족하고, 현재 하천 둑마루를 차도로 활용하고 있어 하천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만 적용하였음 ◦홍수방어벽 설치구간의 입지분석을 통해 소형동물의 탈출 및 이동을 위한 측구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며, 해당 구간은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기존도로에 의해 단절된 지역으로 별도의 측구 등의 설치계획은 미수립하였음	p.825 ~827
•주거 밀집지역 등 야생동물 회피지역은 설치하되, 농경지 및 인구 밀도가 낮은 구간은 완경사의 친환경 호안공법·보축 등 친환경적 계획 수립 제시	◦주거 밀집지역 등 야생동물 회피지역은 설치하되, 농경지 및 인구 밀도가 낮은 구간은 완경사의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	p.822 ~823
◦계획하천 내외에서의 동·식물상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·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, 현지조사를 봄철 조사(2018.4~5월)만을 시행하여 현재의 하천생태계 현황을 근거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-「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의 조사시기(식물, 식생, 포유류, 조류, 양서·파충류, 육상곤충류, 어류 등)에 맞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보전·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◦분류군별 계절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보전·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였음	p.214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-공사 시 회피성이 낮은 법정보호종(어류, 양서·파충류)의 분포 현황(문헌·현지조사)을 구체적으로 추가 조사·제시하고, 현장조사 시 어류 및 양서·파충류 전문가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•특히, 얼룩새코미꾸리,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호강 최상류, 금호강-신천합류부 일대에 대해서는 해당종의 습성·서식환경(산란기 등)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천별 조사지점을 선정하고,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	◦공사시 회피성이 낮은 법정보호종(어류, 양서·파충류)에 대해서는 계절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분포 현황(문헌·현지조사)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,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"제2종환경영향평가업" 면허를 득한 동·식물상 전문기관에서 시행하였음 ◦얼룩새코미꾸리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서식지 정보를 제시하였으며,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통해 서식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·예측 및 실현가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◦맹꽁이의 경우 2018년 장마철 산란장이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조사를 실시하여,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	p.244, p.262, p.727 ~747, p.838 ~842
-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군 및 어류 중 한국고유종이 출현한 각 하천의 구간을 상세히 명기하고 이들 구간에 대한 하상교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 시 저감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※『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』별표2 "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"에 따라 조사 실시	◦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군 및 어류 중 한국고유종이 출현한 각 하천의 구간을 상세히 명기하고 이들 구간에 대한 하상교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 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	p.834 ~836
◦현지조사를 통해 수달, 삵, 원앙, 황조롱이 등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-수변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-출현·서식이 확인된 다양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	◦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달, 삵, 원앙, 황조롱이 등 하천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 할수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하천-수변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◦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	p.837 ~842
◦계획구간 호안공법 중 친환경성이 낮은 공법(게비온 매트리스, 매트리스 돌망태)은 식생활착 및 소형동물의 수생태계 접근성을 제약하는 등 생태적 악영향이 예상됨 -하천과 주변역의 연결성을 확보하고, 자연적인 수변식생역의 형성을 유도 할 수 있는 완사면의 식생활착이 가능한 공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	◦호안공법은 적용 가능한 여러 공법을 제시하였으며, 특히 친자연소재를 활용한 공법 위주로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제시하였음 ◦하천과 주변역의 연결성을 확보하고, 자연적인 수변식생역의 형성을 유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완경사의 식생 활착이 용이한 친환경적인 호안공법(안)을 제시하였으며, 하천의 수리적 특성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	p.822 ~823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-호안공사 지점의 유속 및 소류력 규모를 정밀 진단하여 목재계 및 식생계(식생호안 매트 등) 완경사 호안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	◦호안정비 시 치수적 측면, 생태보전,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호안공법(안)을 비교·검토하여 제시하였음	p.822 ~823
◦현재의 하천 굴곡성 및 구배를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이 활발한 하천의 합류지점은 하천의 자연적인 연속성을 보전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	◦현재 조성된 하천의 하도형상 및 하도경사는 가급적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으며, 일부 사용되지 않는 보 및 낙차공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구간은 철거후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정비하도록 계획하였음	p.1151 ~1334,
◦하중도의 경우 물리적 영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천정비 시 유념하여야 하며,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군락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-귀화식물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, 이들에 대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	◦현재 조성된 하중도를 포함한 하도내 형상은 최대한 보전하여 물리적 변화가 없도록 계획하였음 ◦하천기본계획상 관리계획수립의 귀화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의 제거 및 관리 등을 참조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, 지속적인 하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	p.1151 ~1334, p.844 ~851
나.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◦금호강 전 구간과 연계된 유입하천의 하천구역 중 산림역과 연계된 공간역은 하상, 수변, 호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을 보존하고, 하천역과 산림역 간에 불연속적인 단면이 유발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-금호강과 합류되는 지방하천의 최하류역은 하도 및 저수호안 정비를 지양하고 하중도 등을 포함한 현재의 하천 및 수변식생 구조의 원형을 보전하여야 함	◦산림역과 연계된 공간역은 하상, 수변, 호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을 보존하고, 하천역과 산림역 간에 불연속적인 단면이 유발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음 ◦금호강과 합류되는 지방하천의 최하류역은 하도 및 저수호안 정비를 지양하고 하중도 등을 포함한 현재의 하천 및 수변식생 구조의 원형을 보전토록 하였음	p.882 ~984, p.1151 ~1334
◦또한 하천이 현재 지니고 있는 유수역의 굴곡성을 최대한 보전하여 다양한 하상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계획구간에 위치한 타 지류와의 합류지점에 있어서는 하천의 연속성과 연결의 자연성이 보전되도록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-상류역 및 중류역의 다양한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	◦하천이 현재 지니고 있는 유수역의 굴곡성을 최대한 보전하여 다양한 하상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계획구간에 위치한 타 지류와의 합류지점에 있어서는 하천의 연속성과 연결의 자연성이 보전되도록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함 ◦상류역 및 중류역의 다양한 자연식생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분포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	p.882 ~984, p.1151 ~1334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◦하천별로 본 계획으로 인해 자연성이 우수한 지형, 모래톱·자갈 우세지역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면 이를 조정하여 하천 고유의 자연지형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-이에,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구간마다 하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, 자연형이 우세한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자연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 •하천의 토사는 자연환경상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, 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계획 검토 필요	◦공간관리계획 수립시 하천별로 자연성이 뛰어나 보호가치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(자연성이 우수한 지형, 모래톱·자갈 우세지역 등) 보전지구로 수립하였음	p.1416 ~1566
◦하천의 토사는 자연적 모래톱 등 자연 환경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도정비(퇴적토 준설)로 인한 과도한 자연지형의 변화는 지양하여야 함 -금회 대상 하천 내 하도정비 계획 여부 제시	◦하도정비 계획 없음	
-하도정비 계획 수립 시 정비 전·후 하도의 수리적 특성 변화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, 이를 기반으로 입지 및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	◦하도정비 계획 없음	
-「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」(2015, 국토교통부)에 따라 하도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, 종·횡단계획를 토대로 준설구간, 준설심도, 준설량, 준설토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	◦하도정비 계획 없음	
다.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◦사업시행 시 현 지형은 최대한 살리고 하천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호안공법이나 식생공법 등을 적용하며, 교량 등 인공 시설물 설치 시 경관영향 저감에 유리한 형태, 색채 등으로 계획하여야 함	◦현 지형은 최대한 살리고 하천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호안공법이나 식생공법 등을 적용하며, 교량 등 인공 시설물 설치 시 경관영향 저감에 유리한 형태, 색채계획을 제시하였음	p.1012 ~1016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라. 수환경의 보전(수질, 수리·수문)		
◦하천기본계획은 기왕 홍수피해 이력과 원인 분석을 통해 계획하천유역이 갖는 강우와 홍수 등 수문량의 크기 및 빈도, 홍수 잠재 피해능에 따라 상위 치수계획에 부합함과 동시에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	◦하천기본계획은 홍수피해 이력, 풍수해 위험지구 현황 등 원인 분석을 통해 계획하천유역이 갖는 수문량의 크기 및 빈도, 홍수 잠재 피해능에 따라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음	p.1113 ~1119
-따라서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,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시설,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, 보전과 복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	◦제방능력 검토를 통해 과부족 구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개수계획 세부 현황을 제시하였음	p.1151 ~1230
•계획 하천별로 측점별 제방능력 검토결과(계획홍수위, 기설제방고, 계획제방고, 여유고, 과부족, 제방계획)를 토대로 정비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(도면 및 표로 제시) ※평가서(959~1012쪽)에 제시된 계획홍수위 표(<표 9.1.4-82>)에 제시하고, 축제·보축·호안·보 및 낙차공·교량공 등 공사구간을 표시(좌·우안 구분)	◦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 제방능력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음 ◦도면 및 능력검토 결과를 표를 통해 제시하였음	p.1151 ~1230
•측점별 제방능력 검토결과 제방여유고가 충분함에도 축제 등 공사계획은 계획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	◦제방능력 검토를 통해 과부족 구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개수계획 세부 현황을 제시하였음	p.1151 ~1230
•사업 전·후의 효과(개수전·후 홍수위 비교)를 비교·분석하여 홍수방어 수단·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	◦각 측점별 홍수위는 개수 전·후로 구분하여 빈도별로 산정하였음	p.1151 ~1230
-이를 토대로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제방 및 호안 정비, 확폭 확장 등의 구조물 설치위주 계획을 지양하고, 최근 침수피해 현황·원인, 침수범위,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(농경지, 가옥 등)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(홍수관리구역 지정, 천변저류지 등)을 우선 검토·제시	◦사업 전·후의 효과를 비교·분석하여 구조물 설치위주 계획을 지양하였으며, 최근 침수피해 및 풍수해 위험지구 현황을 조사하여 위험지구에 대해 재가설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	p.1113 ~1119 p.1151 ~1230
◦기존 하천 시설물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이·치수 시설물의 위치, 정비이력, 기능, 성능 등을 조사하고, 계획의 내용과 종합하여 표 및 도면으로 일괄 제시 -치수시설물(제방, 낙차공, 교량, 배수시설 등)에 대한 연장구간, 위치, 제원, 정비이력과 이수시설물(취수보 등)에 대한 위치, 제원, 정비이력, 취수방식, 이용량 등 조사·제시	◦기존 하천 시설물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이·치수 시설물의 위치, 정비이력, 기능, 성능 등을 조사하고, 계획의 내용과 종합하여 표 및 도면에 제시하였음 ◦이·치수시설물의 위치, 정비이력, 기능, 성능 등의 현황조사 및 시설물에 대한 능력검토를 시행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	p.1101 ~1112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-하천구역 내 지하수 관정(위치, 제원, 용도, 채수량 등) 및 기타 환경 시설물, 친수시설 현황을 조사·제시	◦하천구역 내 지하수 관정(위치, 제원, 용도, 채수량 등) 및 기타 환경 시설물, 친수시설 현황을 조사·제시하였음	p.1109 ~1112
◦하천 설계 빈도는 하천의 등급 및 치수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일률적인 결정은 지양하고 하천 제내지의 시가화 또는 건조지역 비율, 유역면적, 하도경사, 하폭, 하천연장,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,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-과거 주요 호우사상에 대한 홍수량을 산정하여 계획하천의 최대 홍수빈도를 분석하고, 토지이용현황과 치수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설계빈도(평가서 953쪽~958쪽)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	◦하천설계기준에 제시된 설계빈도를 참고하고, 하천의 제내지 현황, 홍수량 증가에 따른 치수 안정성 확보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국가하천 100년, 200년, 지방하천 80년, 100으로 적용하였음	p.1145 ~1150
-또한, 대안 평가시 설계빈도(50년, 80년, 100년)에 따른 수단·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	◦대안 평가시 설계빈도에 따른 수단·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	p.1145 ~1150
◦계획 하폭 결정 시 획일적인 하폭확장을 지양하고, 기존 제방 상태, 하천시설물, 토지이용 현황, 지형·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제시 -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·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	◦계획하폭 설정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계획하폭을 기준으로 각 하천의 현황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폭을 산정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음 ◦하도계획시 하도준설 및 하상 평탄화 등의 하상정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음	p.1151 ~1230
-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부족고가 크지 않거나 현재 하폭과 계획하폭의 차이가 미미한 구간은 현재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	◦하도계획시 하폭을 확장하는 구간은 현제방고가 낮아 홍수시 월류피해가 예상되고 월류시 피해구간이 넓은 구간에 대하여만 계획하였으며, 일부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 및 월류피해 면적이 적은 구간은 여유고를 확보하는 보축 계획 또는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였음	p.1151 ~1230
◦교량계획의 경우 일률적인 재가설 사유를 제시한 바, (평가서 1021쪽) 각각의 교량에 대하여 재가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시설의 기능적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·존치·재가설 계획 수립이 필요 -사업대상 하천 내 교량 현황을 제시하고,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, 재가설 여부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•계획평면도에 교량의 위치를 표기하고, 현장사진을 포함한 현황 분석자료 제시	◦교량계획은 현재 교량의 연장, 경간장 및 형하고 등의 능력검토를 시행하고, 이에 부족한 교량들에 대해서만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◦기설치된 모든 교량에 대하여 능력검토 및 기능분석을 시행하였으며, 철거 및 존치, 재가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◦계획평면도에 교량의 위치를 표기하고, 시설물의 현황사진을 제시하였음	p.1232 ~1247 p.1305 ~1314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-불가피하게 재가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하천 유심부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생태적 기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	◦교량 교각은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, 교각 위치 및 규격은 향후 실시설계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	p.1232 ~1247 p.1305 ~1314
-교량 연장이 충분한 경우 경간장과 여유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 검토	◦교량 연장이 충분하나, 경간장과 여유고가 다소 부족한 교량들은 존치하도록 계획하였나, 향후 노후화에 따른 재가설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제시하였음	p.1232 ~1247 p.1305 ~1314
◦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방재의 근간이 되는 재해의 예방, 대응, 복구를 총괄하는 계획이므로 관련계획을 검토·제시하고,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계획 하천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금회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◦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험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금회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음	p.1117 ~1119
◦유로변경이 있을 경우, 변경 전·후의 잠재적 위험성을 비교·검토하여 유로변경 계획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여 수립	◦유로변경 없음	-
◦산지 무제부 구간은 제방 설치 후 복원이 어려우므로 제방 축제 여부에 따라 그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	◦산지부에 축제계획 없음	-
◦둑마루폭 부족에 따라 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방 안전성과 중요도, 제내지의 상황,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축계획 수립여부 판단·제시	◦기성제 능력검토를 통하여 둑마루폭 부족구간을 검토하였으며, 제방의 유지관리 및 제내지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으로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음	p.1151 ~1230 p.1294 ~1304
◦호안계획은 현 호안의 식생활착 상태와 제방 안정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여부 제시	◦호안계획은 수충부 및 비수충부 등의 하도현황을 검토하고, 현재 사면의 포락여부를 조사하여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 계획을 수립하였음	p.28 ~31
2) 생활환경의 안정성		
◦교량, 보·낙차공 등의 하천시설물의 재설치 및 철거 등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하천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재외지 내 폐기물 적치를 지양하고 폐기물 발생 즉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◦제외지 내 폐기물 적치를 지양하고 폐기물 발생 즉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였음	p.1397 ~1403
-또한, 해당지역「폐기물처리기본계획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소각, 매립, 재활용 등의 처리 목표율(%)을 설정하고, 목표율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◦「폐기물처리기본계획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소각, 매립, 재활용 등의 처리 목표율(%)을 설정하고, 목표율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였음	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3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	
◦하천 및 주변 토지이용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보전지구, 복원지구, 친수지구 등을 설정하는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금회 평가서에 제시한 친수지구 설정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	◦공간관리계획에서 하천지구지정은 하천현황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음	p.132 ~136
-금회 계획 대상 하천들은 금호강을 포함한 금호강 중·하류 구간으로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보전·복원 중심으로 계획 할 필요가 있음	◦친수지구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지역주민의 하천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,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	p.1424 ~1483
-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용이 빈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함 •해당 구역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·제시	◦친수지구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,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 등을 제시하였음	p.1424 ~1483
◦친수지구 지정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한정된 구역에서만 친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당위성이 결여된 친수지구 확대계획은 지양되어야 함 -하천 합류부는 생태적 연결성이 우수하고, 수변과 주변 산림생태역이 중첩되어 만나는 공간역으로 친수지구 설정은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함	◦친수지구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지역주민의 하천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,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	p.1424 ~1483
◦수변 자연식생이 양호한 구간은 최대한 보전하고 식재계획은 수변 기 훼손지의 복원을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, 해당 시설로 인하여 하천의 비점오염 증가를 유발하거나 하천 자연환경 교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	◦하도내 식생이 양호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구간은 최대한 보전지구로 계획하고, 일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구간으로는 복원지구로 계획하였으며, 하천 자연환경 교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저감방안 등을 계획하였음	p.1424 ~1483
◦계획하천 중 풍수해위험지구, 수질오염관리 필요지역, 인구밀집지역 등과 인접한 하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, 상기 환경적 민감지역에서의 사업은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	◦계획하천의 치수, 이수, 하천환경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검토하여 하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, 사업의 타당성, 정비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	p.1567 ~1568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3. 기타 ◦초안대비 계획하천별 하천시설물 계획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, 변경사항(토지이용계획 변경 등)을 비교·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(도면, 표 등)하고, 도면, 사진 등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대하고 컬러로 제시하여야 함	◦초안대비 계획하천별 하천시설물 계획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, 변경사항(토지이용계획 변경 등)을 비교·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(도면, 표 등)하고, 도면, 사진 등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대하고 컬러로 제시하였음	p.1436, p.1484 ~1568, p.1516 ~1566, p.2158 ~2212
◦하천·수계 별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을 대축척 도면상에 가독성이 명확하게 제시(자호천과 같이 유로가 긴 하천은 일정구간으로 구분)	◦하천·수계 별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을 대축척 도면상에 가독성이 명확하게 제시하였음	p.1513 ~1566
◦협의회 심의의견,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본안에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(페이지 표시)	◦협의회 심의의견,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본안에 상세히 제시하였음	p.97 ~106, p.119 ~136
◦평가서(본안) 작성시 수치 등의 오타를 줄여, 사업계획 설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	◦평가서(본안) 작성시 수치 등의 오타를 줄여, 사업계획 설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음	

2) 관련 지자체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□대구광역시 ◦금번 금호강 하천구역 조정으로 검사동 일원 발생되는 폐천부지에 대해 제방 인접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해당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폐천부지 활용방안 제시	◦현재 하천구역으로 활용이 불필요한 구간은 폐천부지로 지정하였음	p.1513 ~1516
◦금호강 하천공간관리 계획중 대구시 도심 주변 대규모 하천 친수공간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하천 지구 변경 필요	◦금호강 하천공간관리 계획은 대구시 도심 지역을 관류하는 하천특성을 감안하고, 지역주민 의견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였음	p.1436 ~1454, p.1484 ~1568
◦금호강 동촌유원지에 제방설치 또는 홍수관리구역 지정시 유원지 기능상실 및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동촌유원지의 역사·문화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방재신기술(차수벽: 무빙월 방식) 적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검토가 필요함	◦금호강 축제지구 중 동촌지구에 대한 제방설치 계획은 향후 공사시 동촌유원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며, 유원지로의 경관성을 저하시키므로, 토사제방과 전도식 옹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제방을 계획하여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	p.1486 ~1495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□대구광역시 수성구 ◦욱수천 내 계획된 욱수2교(No. 2+303)의 재설치 위치 변경 -사월지구 지구단위계획(2017.12)에 따라 도시계획도로(교량)의 신설이 약 30m 상류쪽(욱수12징검다리, No. 2+303)에 있으므로 이를 표시하고 기존 교량(욱수2교)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	◦욱수천 내 욱수2교는 사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재가설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	p.1307~1310, p.1540~1541
□대구광역시 동구 ◦금호강 검사동 -해당 구역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며, 홍수위 조절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일 적절하며,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기존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폐천부지 활용방안에 반영 요청	◦현재 하천구역으로 활용이 불필요한 구간은 폐천부지로 지정하였음	p.1513~1516
◦No.57+000~No.60+180 -해당 구간은 K-2이전부지와 연계한 핵심거점으로 지역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친수거점지역으로 반영 요청	◦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)구간으로 지정하였음	p.1436~1442, p.1513~1516
□대구광역시 북구 ◦25+000~33+270(좌안): 근린친수→친수거점 ◦37+100~38+000(좌안): 복원→근린친수 ◦41+000~49+000(좌안): 근린친수→친수거점 ◦39+000~40+240(좌안): 보전→근린친수	◦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, 근린친수)구간으로 지정하였음	p.1436~1442, p.1513~1516
□대구광역시 서구 ◦25+000~33+270: 근린친수→친수거점	◦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)구간으로 지정하였음	p.1436~1442, p.1513~1516
□대구광역시 달서구 ◦00+000~02+415(좌안): 복원→근린친수 ◦02+415~02+450(좌안): 복원→근린친수	◦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)구간으로 지정하였음	p.1436~1442, p.1513~1516
□한국농어촌공사 ◦본 계획에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산3-2번지외 7필지는 현재 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승인을 득한 후 매각입찰 공고를 거쳐 낙찰자(김창수)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중에 잇는 토지임. 본 토지가 하천 구역에 포함될 경우 매수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	◦해당 토지들은 강창교 하부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므로 현재 “홍수관리구역”으로 지정된 토지이며, 금회 변경된 계획홍수량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들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므로 하천기본계획에서도 “홍수관리구역”또는 “하천구역”으로 지정할 예정임	p.1151~1159

나. 주민 등의 의견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□대구광역시 동구 하상운, 박석희 ◦하천기본계획 p10. 4.하천별 정비계획(안)은 현재 거주하고 영업하고 잇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은 계획이며, p12.금호강 동촌지구 정비계획(2/2) 제1안, 제2안, 제3안은 수용할 가치조차 없다고 사료되어 첨부하는 내용과 주민 연명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◦금호강 축제지구 중 동촌지구에 대한 제방설치 계획은 향후 공사시 동촌유원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며, 유원지로의 경관성을 저하시키므로, 토사제방과 전도식 옹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제방을 계획하여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	p.1486 ~1495
□대구광역시 북구 주도광, 이경자, 김영숙, 박원정, 장시영, 안영애, 정오순, 정금정, 진덕자, 하동호, 함수자, 권기문, 손병엽, 김순득 ◦금호강변 하류 산격대교 밑에 위치한 잔디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.	◦금호강의 동화천 합류점은 대규모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많은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근린친수)구간으로 계획하였음	p.1436 ~1442, p.1513 ~1516
□대구광역시 북구 배순화 ◦금호강 검단동 지역은 대구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교통이 좋고 둔치도 잘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멀리서 체육시설 및 둔치시설을 이용하려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금호강 워터폴리스가 조성되어 있으며, 금호강, 팔공산과 연계하여 대규모 체육시설 및 각종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.	◦금호강의 검단동 지역은 도심지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간임을 감안하여 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)구간으로 계획하였음	p.1436 ~1442, p.1513 ~1516
□대구광역시 북구 진하윤 ◦금호강 내 하중도 왼쪽에 인접한 둔치를 하중도와 연계 개발하여 금호강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북구지역에 대규모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	◦금호강의 하중도 부근 고수부지는 하중도와 연계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)구간으로 계획하였음	p.1436 ~1442, p.1513 ~1516
□대구광역시 서구 김귀자 ◦해당지역을 도시와 연결하고 적극적인 수변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힐링공간을 되었으면 합니다.	◦금호강의 달서천 합류점은 도심지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간임을 감안하여 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)구간으로 지정하였음	p.1436 ~1442, p.1513 ~1516
□대구광역시 서구 김은영, 강병출, 박점숙, 서정순, 장재명 ◦서대구 KTX와 연계된 개발사업 요망	◦금호강의 달서천 합류점은 도심지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간임을 감안하여 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친수(친수거점)구간으로 지정하였음	p.1436 ~1442, p.1513 ~1516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□대구광역시 달서구 김창수 ◦파호동 산3-2번지 외 7필지는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농작물 경작하는 등의 경제적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토지로 하천구역에 편입하거나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함	◦해당 토지들은 강창교 하부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므로 현재 "홍수관리구역"으로 지정된 토지이며, 금회 변경된 계획홍수량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들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므로 하천기본계획에서도 "홍수관리구역"또는 "하천구역"으로 지정할 예정임	p.1151 ~1159
□대구광역시 달성군 김병관 ◦다사읍 이천리 661 옆 금호강의 홍수수위가 현재 4대강이 설치된 후 부터는 수위가 많이 높아졌는데도 옛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많은 부작용이 있음(수위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침수구역이 아닌데도 모든 허가 신청시 반려됨)	◦해당 토지는 현재 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므로 "홍수관리구역"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며, 금회 하천기본계획에서도 제방신설 또는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의 하천개수계획이 필요한 토지임 ◦해당 토지는 산지부에 접한 소규모 농경지이고, 홍수범람예상지가 좁고 긴 형상이므로, 금회 계획에서는 제방신설 등의 구조적 개수방안보다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적 치수계획을 수립하였음	p.1151 ~1230
□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옥표 ◦박곡리 해량교 다리에서 박곡리, 달천리 방향으로 낙동강 4대강 공사로 수위가 낮아져 금호강도 강 바닥이 낮아져 하천부지가 많이 생겼습니다. 상대적으로 서재리, 세천리 쪽 하천부지에는 자전거도로, 운동시설, 기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하천부지 조성이 잘 되었지만 건너편 박곡리에는 일반보전 지역이라 전혀 하천부지 개발이 불가하므로 친수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연명으로 건의합니다.	◦해당 달천리, 박곡리 구간의 제내지는 금호강을 따라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며, 타지역에 비하여 고수부지가 좁고, 하도내 자연스러운 식생이 우수한 점을 감안할 때, 보전(일반보전)으로 계획하였음	p.1436 ~1442, p.1513 ~1516
□경상북도 칠곡군 박영명, 박노수 ◦홍수가 지면 송림교가 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다시 교량을 넓혀주시어야 합니다. 교량이 오래되고 보수도 시급합니다. 동네가 홍수의 피해를 막아 주는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될 것입니다.	◦팔거천에 위치한 송림교는 형하고와 경간장이 하천설계기준에서의 기준보다 미달되는 교량이므로 금회 계획에서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재가설을 계획하였음	p.1234 ~1242, p.1307 ~1310
□경상북도 칠곡군 손창우 ◦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금암리 1364-69를 불하 바랍니다.	◦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

(표 계속)

초안의견	반영여부	비고
□경상북도 칠곡군 한영길 ◦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암리 1364-68을 불하해 주시고, 송림교 재가설을 건의합니다.	◦팔거천에 위치한 송림교는 형하고와 경간장이 하천설계기준에서의 기준보다 미달되는 교량이므로 금회 계획에서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재가설을 계획하였으며, 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p.1234~1242, p.1307~1310
□경상북도 칠곡군 박정태 ◦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암리 1364-56을 불하해 주시고, 송림교 재가설을 건의합니다.	◦팔거천에 위치한 송림교는 형하고와 경간장이 하천설계기준에서의 기준보다 미달되는 교량이므로 금회 계획에서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재가설을 계획하였으며, 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p.1234~1242, p.1307~1310
□경상북도 칠곡군 이순주 ◦송림교 재가설을 건의하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 부지 금암리 1364-66을 불하를 바랍니다.	◦팔거천에 위치한 송림교는 형하고와 경간장이 하천설계기준에서의 기준보다 미달되는 교량이므로 금회 계획에서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재가설을 계획하였으며, 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p.1234~1242, p.1307~1310
□경상북도 칠곡군 채순이 ◦송림교 재가설을 건의하고,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암리 1364-70을 불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.	◦팔거천에 위치한 송림교는 형하고와 경간장이 하천설계기준에서의 기준보다 미달되는 교량이므로 금회 계획에서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재가설을 계획하였으며, 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p.1234~1242, p.1307~1310
□경상북도 칠곡군 박기태 ◦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암리 1364을 불하 바랍니다.	◦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
□경상북도 칠곡군 유인용, 유계상 ◦송림교 재가설을 건의하고,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금암리 1364-57은 불하를 바랍니다.	◦팔거천에 위치한 송림교는 형하고와 경간장이 하천설계기준에서의 기준보다 미달되는 교량이므로 금회 계획에서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재가설을 계획하였으며, 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p.1234~1242, p.1307~1310
□경상북도 칠곡군 박광순 ◦토지중 토지 사용에 있어 현재 거주중인(칠곡군 금암리 16-17) 하천 부지에 대해 토지용도 변경 및 거주자 불하가 가능토록 의견 요청 드립니다.	◦하천구역 변경 및 불하는 팔거천 관리기관인 경상북도 및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함	